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631호)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5. 12.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05. 1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6. 02.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원)

부서명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비고
합 계		1,619,880,000	1,584,825,350	35,054,650	
재무과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화재 복구	28,000,000	24,591,700	3,408,300	
주민생활과	소 계	127,455,000	127,422,700	32,300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	59,455,000	59,422,700	32,30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68,000,000	68,000,000	-	
해양수산과	어업재해(글페사) 재난지원금 지원	272,925,000	272,925,000	-	
안전관리과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화재 복구	180,000,000	175,216,000	4,784,000	
건축개발과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화재 복구	22,000,000	19,750,000	2,250,000	
건설과	소 계	739,500,000	729,356,250	10,143,750	
	한발대비 용수개발	4,500,000	4,500,000	-	
	가뭄대응 농업용수개발	735,000,000	724,856,250	10,143,750	
농업기술과	벼 병해충 긴급 공동 방제(4차) 대행료 지원	250,000,000	235,563,700	14,436,300	

4. 관련근거

- 가.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4항
- 나.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제2항

5. 승인요청안: 붙임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임.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9건 사업 1,619,880,000원이며,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화재 복구 등 9건 사업 1,584,825,35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건 사업 35,054,650원이 발생하였음.
- 지출 사유별 분석결과
 - 일반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9건 사업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로 모든 사업비가 정상 지출되었음.
 - 어업재해(굴폐사)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로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좋은 사례임.
 - 재무과의 고성읍 다세대 주택 폭발·화재 복구는 군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전지모듈 교체를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미등록하여 지출 보전의 기회를 상실함.
 - 농업기술과의 벼 병해충 긴급 공동방제(4차) 대행료는 당초예산에는 민간보조금으로 465,120,000원을 편성하였고 4차 추가 지원 필요에 따른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50,000,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35,563,700원을 지출하였는데 예비비 지출 과목 제한 해소를 위해 과목을 변경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임.

○ 종합의견

-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화재 복구 등 9건 사업의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결정 및 지출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매년 상시적으로 재난·재해와 관련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출소요 예측과 예비비 지출 제한과의 연관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6. 2. 원안가결